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7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남궁역, 민병주,
박 석, 박중화, 박춘선,
소영철, 윤영희, 이봉준,
이영실, 최진혁, 홍국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 요금’의 경우 전액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에 필요한 일반회계 보전이 2008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하나인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나 감염병 등에 따른 사회재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 나.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등을 삭제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수도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시설의 구경별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3. (생략)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
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 7. (생략)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
공미터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
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공미터 이
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
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
공용이었던 경우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공인에 한한다.

9.·10. (생략)

② (생략)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2.·3. (현행과 같음)

<삭제>

5. ~ 7. (현행과 같음)

<삭제>

9.·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에 필요한 일반회계보전이 2008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해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하나인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